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. 10. 23 선고 2024가단2954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4. 10. 2.

판 결 선 고 2024. 10. 23.

주 문

-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사실관계

갑 제2호증,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.

가. 원고는 2023. 8. 10.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점포’라 한다)을 임대차보증금 20,000,000원, 차임 월 2,535,000원(부가가치세 별도), 임대차기간 2023. 8.

12.부터 2024. 8. 11.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(이하 ‘이 사건 임대차계약’이라 한다).

나.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,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용도란에는 ‘상업용/뷰티샵’이라고 기재되어 있다.

다. 원고는 파주경찰서로부터 2024. 3. 21. 이 사건 점포가 성매매 장소로 단속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.

2. 판단

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를 성매매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24. 5. 9. 및 2024. 5. 10.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,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의사표시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.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판사 이유빈

별지